

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“이하 공단”)은 기술·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『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』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최초공고 2025. 12. 31

고용노동부 장관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I.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)

1. 사업개요

-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·점검, 공단의 기술지도·민간위탁사업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
2. 지원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장의 사업주(건설업(40001~9)제외, 건설업 본사(90515)는 가능)
 -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- ※ 중소기업 확인서[첨부1]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 -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- ※ 중소기업 확인서[첨부1]를 발급받아 제출하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

3. 참여제한

○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

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▶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)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- ▶ 당해연도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,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
- ▶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·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

4. 지원내용

○ (지원방식) 품목별 상시 신청·접수 및 공모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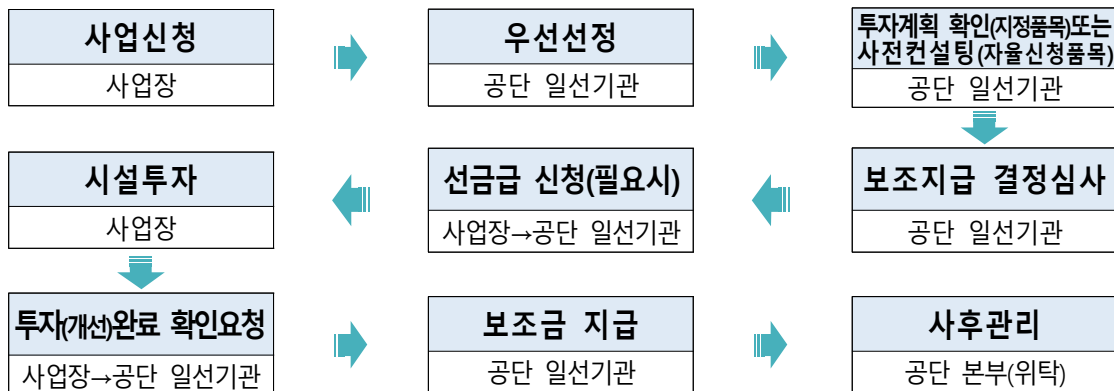
보조금 지급 대상품목			④신속지원 (Quick-pass)
①지정품목(32종)	②관리품목(1종)	③자율신청품목	
상시	공모	상시	상시
연중	별도 공고	연중	연중

- ① 지정품목 :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위험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·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
- ② 관리품목 :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(전동지게차)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·지원
- ③ 자율신청품목 :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으로 연중 상시 지원
- ④ 신속지원 :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및 감독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지원

-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,000만원까지
 -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
 - ① 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,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에 한함), ②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, 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④ 고위험업종(6개 업종)*은 각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

*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
 - ①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, ②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, ③ 기타 섬유제품제조업(20209), ④ 자동차부분품제조업(21846), ⑤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(21856), ⑥ 화학비료제조업(20903)

- (지원횟수) 당해연도 1회에 한함(신속지원 제외)
 -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(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)
- (지원조건)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 지원
- (지원품목) 지정품목은 위험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·안전장치 등 [첨부2],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 지원
 - ※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 -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‘적정’ 시에만 지원이 가능[첨부3]
 - ※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,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
- (지원절차) 일선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
 - 필요 시,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[첨부4]



※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, 투자계획확인,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할 수 있음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지원예산) 272.4억원
 - ※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
바라며,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.
- (신청기간) ' 26. 1. 2.(금) ~ 일선기관별 자원 소진 시까지
- (신청방법)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·접수
 -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
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(오프라인 신청불가)
 - ☞ 온라인 신청 매뉴얼: portal.kosha.or.kr > 지원사업 신청 > 안전
일터 조성지원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개선) > 자료실
 - 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지원품목 제작·판매
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- (신청문의)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-3088(관할지역 자동연결)
- (제출서류)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
 - 온라인 신청 시 「참여사업장 이용 동의」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
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(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
서명은 반려 등 조치)
 -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(담당자)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

구 분	비고
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	
②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 - 공사품은 도면, 세부 산출 내역서 등 관련 자료 제출	
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 -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, 수입명장 등 - 공의원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해당시
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

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(현장 사진 등)	
⑥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,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-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	해당시
⑦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 ※ 50인 이상인 경우 [첨부1]	해당시
⑧ 추가지원 증빙자료(강소기업, 특별재난지역 등)	해당시
⑨ 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[첨부5]	자율신청품목에 한함
⑩ 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[첨부5]	자율신청품목에 한함
⑪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[첨부5]	자율신청품목에 한함
⑫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(확인)서 사본	해당시
⑬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[첨부6]	

<참고>

-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중 실거래금액 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 이상)을 말하며 ¹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[첨부8], ²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, ³거래사실 확인서[첨부9]를 모두 제출
- ④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 -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 -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고용(산재)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-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⑩ 도입계획서, ⑪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
- 신속지원의 경우 ⑬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는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

<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조건>

<전자세금계산서>

- 1) 전자세금계산서에는 '모델명'과 '공급가액'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
예) 'XXX 외 3건', '물품대금'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2) 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3) 공단 재정사업(보조, 융자)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 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4)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※ 2) ~ 4)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,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
※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·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/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
- 5) 1) ~ 4)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·지급할 수 있음
※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

<공사원가계산서>

- 공단이 별도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(별도 공지 예정)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 한하며,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공단의 보완요청을 통해 제출 가능

6. 보조금 지급조건
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·설치 등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,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
- (투자완료기간)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**4개월 이내**
 - 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- (확인요청)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·설치 등 완료 후, 다음의 서류를 **온라인**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 확인 요청
 - ※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

구 분	비고
①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	
②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 각 1부	
③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-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(포함내용: 모델명, 수량, 금액, 결제방법)	
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
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(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)	
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	해당시
⑦ 지급보증보험증권	(첨부10)
⑧ 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	해당시(첨부11)
⑨ 품목별 안전인증, 안전검사 등 인증·검사 관련 서류	해당시
⑩ 보조금 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	
⑪ 품목별 「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」	
⑫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 - (양산품)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(거래명세서 포함) - (공사품) 공사원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신속지원

<참고>

- ④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 가능
 -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한하여 제출 생략
 -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고용(산재)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-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(보조결정금액 이상) 제출[첨부10 참조]
- ⑧의 「하자보증보험증권」은 제작·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,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

<입금 증빙서류>

(오프라인 구매시)

- ① (계좌이체) **이체확인증* 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**
-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

- ① (계좌이체) **이체확인증*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))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**
-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- ② (카드결제) **신용카드매출전표* + 신용카드복사본****
- ※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 - * (신용카드 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 - ** (신용카드 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
7. 선금급 제도(신청 시)
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, 해당 사업의 고위험 개선 지원 품목 구입·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
- 공단의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에서 지급 가능

8. 부정당 행위 등 취소·환수, 참여제한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·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>

취소·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	추가 환수	참여 제한
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	5배	5년
▶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	-	3년
▶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	2배	3년
▶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	2배	3년
▶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·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	2배	3년
▶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	-	3년

9. 기타사항

- (문 의 처)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☞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> 고객센터 > 관할소개 > 지역별 문의처 참고
-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 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
 -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)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

- (관련법령·규정)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69호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(공단규칙 제1145호)을 따름

10.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개선 內)

- (사업개요)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예방시설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(지원대상)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,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*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**

* 한국산업단지공단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

**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리자

- (지원품목) 입주업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예방시설
 - 오염물 세척을 위한 세척시설(목욕·세탁시설)
 - 고열·폭염·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
 - ※ 건물 건축비, 관리비, 운영비 등 지원 제외
- (지원한도)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(공단 판단금액의 50% 지원)
 - ※ 신청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, 지급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
- (선금급) 지급결정금액의 80% 이내에서 선지급 가능
 - ※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은 "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6년5개월(사후관리기간(5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5개월))"으로 적용

- (신청방법)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(제출서류)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

구 분	비고
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	
②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 -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	
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 - 전문가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, 수입면장 등 - 공사업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
④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※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·운영 방안, 매칭비용 부담방안,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,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	
⑤ 설치장소 보유 서류(자가 : 등기부 등본, 임차 : 임대차 계약서)	
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※ 신청자가 "사업주단체" 또는 "개별사업주"일 경우에 한하여 제출	
⑦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	
⑧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	
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[첨부7]	
⑩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[첨부6]	

<참고>

-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중 실거래금액 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 이상)을 말하며 ¹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[첨부8], ²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, ³거래사실 확인서[첨부9]를 모두 제출

<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조건>

<전자세금계산서>

- 1) 전자세금계산서에는 '모델명'과 '공급가액'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
예) 'XXX 외 3건', '물품대금'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2) 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3) 공단 재정사업(보조, 용자)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4)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※ 2) ~ 4)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,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
※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·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·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
- 5) 1) ~ 4)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
※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

<공무원가계산서>

- 공단이 별도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(별도 공지 예정)에서 작성한 공무원가계산서에 한하며,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공단의 보완요청을 통해 제출 가능

○ (기타사항)

- **문의처** :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☞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> 고객센터 > 관할소개 > 지역별 문의처 참고
- **사후관리** :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 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
 -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)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
- **준용** : “6. 보조금 지급조건”, “8. 부정당 행위 등 취소·환수, 참여제한” 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
- **관련법령·규정** :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69호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(공단규칙 제1145호)을 따름

첨부1

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
(다만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)

Q. 중소기업 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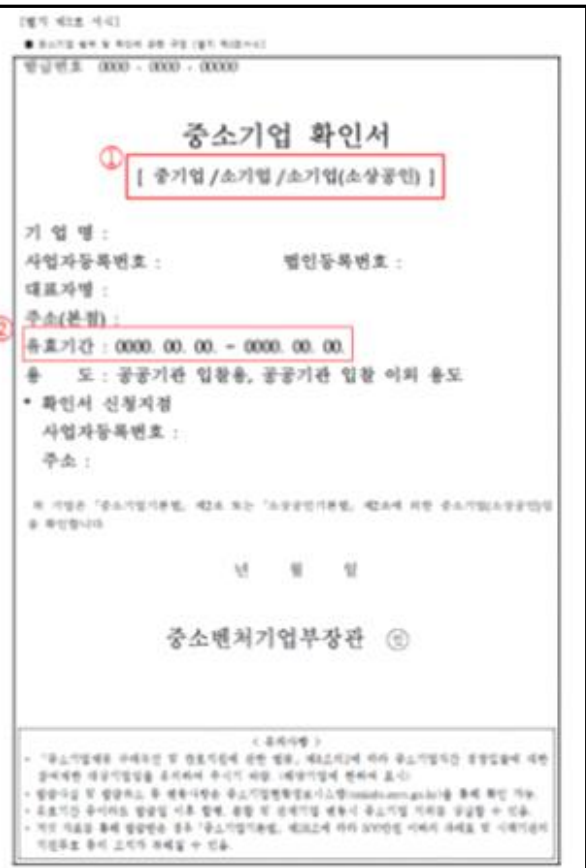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

- 문의

- 일반상담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: 국번없이 1357
- 온라인자료 제출, 중소기업 현황 : 02-3215-2674



■ 확인사항

-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에 한하여 지원(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)
- ②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
 - 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 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 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□ 위험기계 · 기구 · 설비(12종)

연번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비고
1	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	▶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(연코일러, 연코일레벨러, NC레벨러피더, NC롤피더, 에어피더, 레벨러 등) ※ 코일중량, 폭에 따른 차등 지원		상시지원
2	금형 교환장치	▶ 프레스,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※ Q.D.C(프레스용), Q.M.C(사출성형기용) → 클램프 능력, 타입에 따른 차등 지원		상시지원
3	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	▶ 취출로봇(자율안전확인신고품) ▶ 호퍼로더 ※ 호퍼로더는 원료투입 높이 1M 이상인 경우 지원(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)		상시지원
4	천장크레인	▶ 천장크레인(3톤 미만) ※ 안전인증제도 시행(2009.01.01.)이전 제작·설치된 것으로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※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		상시지원
5	고소작업대	▶ 고소작업대(안전인증품)		상시지원
6	소음방지시설	▶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▶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※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%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, 폐기설비 확인		상시지원
7	식품가공용기계	▶ 파쇄기, 절단기,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기계(자율안전확인신고품) ※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%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, 폐기설비 확인		상시지원
8	전동지게차	▶ 전동 지게차(전·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)		공모지원 (관리품목 별도공고)
9	컨베이어	▶ 고정식 컨베이어(자율안전확인신고품) (벨트 또는 체인, 롤러, 트롤리, 버킷, 나사) ※ 기존설비 모터용량의 150%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, 폐기설비 확인		상시지원
10	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	▶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※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		상시지원
11	산업용리프트	▶ 산업용 리프트(전체교체) ※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(랙 및 피니언·유압식)에 한함		상시지원
12	K-사다리	▶ K-사다리(S마크 인증제품) ※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		상시지원

※ 교체 시, 기존설비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



□ 방호 · 안전장치(19종)

연번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비고
1	건설기계 안전장치	▶ 건설기계(굴착기, 로더) 충돌예방설비(인체감지형), AVM 일체형 ▶ 굴착기 자동안전 킥커플러(국·내외 안전인증품)		상시지원
2	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안전장치	▶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(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, 전복방지장치 등) ▶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(안전바, 안전봉)		상시지원
3	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	▶ 광전자식(안전인증품) ▶ 일행정 일정지기구 ▶ 양수조작식(안전인증품) ▶ 재기동 방지장치 ▶ 확동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		상시지원
4	끼임방지 시설	▶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, 울 등 ▶ 롤러기 안전장치(급정지·역회전장치, 울·안내로울러) ▶ 컨베이어 안전장치(덮개, 울, 연동장치, 비상정지장치) ※ 각각 안전인증·검사 기준에 따름		상시지원
5	기동스위치 잠금장치·표지판	▶ 기동스위치 잠금장치·표지판 ※ 1세트(35개):안전자물쇠(5), 하스프(5), 밸브잠금(3), 케이블잠금(2), 차단기 잠금(5), 전기플러그 잠금(5), 안전태그(10) → PSM대상사업장 : 밸브잠금 +5개 가능		상시지원
6	크레인 안전장치	▶ 과부하방지장치(안전인증품) ▶ 비상정지장치(펜던트스위치 교체 등) ▶ 무선원격제어기(전파법인증) ▶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·혹 ※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, 2t 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		상시지원
7	소형 타워 크레인 안전장치	▶ 소형 타워크레인(3톤미만 무인식) (정격하중 경고·확인장치, 풍속계, 영상장치,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) ※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		상시지원
8	지게차 안전장치	▶ 지게차 충돌예방설비(전·후방 카메라, 감지센서, 경광등, 경보음 발생장치, 전조등, 후미등, 라인빔 등) ▶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(연동장치 포함), 지게차 캐빈		상시지원
9	리프트·승강기 안전장치	▶ 과부하방지장치(안전인증품) ▶ 방호울 공사 ▶ 권과방지장치 ▶ 낙하방지장치 등		상시지원
10	산업용로봇 안전장치	▶ 방호울 ▶ 라이트커튼(안전인증품) ▶ 안전매트(안전인증품) ▶ 레이저 스캐너 ▶ 인터록 스위치, 비상정지장치, 가동허가장치 등		상시지원
11	추락방지 시설	▶ 계단,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▶ 안전난간, 안전방책, 개구부 덮개, 이동식사다리(안전인증품) ▶ 추락 안전매트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▶ 채광창 안전덮개 ▶ 안전블록 세트(안전인증품) ※ 안전블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지붕공사 실적有, 안전그네 일체형(안전대+안전블록)으로 품목당 1천만원 이내 지원		상시지원
12	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 재해 예방설비	▶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		상시지원

□ 방호 · 안전장치(19종)

구분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비고
13	화재폭발 예방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환기팬(일반형, 방폭형, 제트에어 구동팬) ▶ 덕트 ▶ 복합가스 농도측정기(휴대용) ▶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(고정식, 이동식) ▶ 비상대피 유도선(원카) ▶ 비상대피 유도등 ▶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(고정식, 이동식) ▶ 방폭 전기기계·기구(KCs방폭인증) ▶ 건축물 내화 도장공사(전문건설업체 시공) ▶ 마른모래 ▶ 용접방화포 ▶ 비상경보장치 ▶ 비상조명등 ▶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▶ ABC분말 소화기 ▶ 이동식 포소화설비 ▶ 양압설비 ▶ 소화약제 ▶ 팽창질석 등 	    	상시지원
14	질식재해 예방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호흡용 보호구(송기마스크, 공기호흡기 → 안전인증품) ▶ 가스측정장비(산소·복합가스 농도측정기) ▶ 환기설비(환기팬, 환기덕트) ▶ 긴급구조설비(구조용사다리, 구명로프, 구조용삼각대세트 등) ▶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	  	상시지원
15	보조금 신속지원 예방품목	▶ 전체 사망사고 예방설비		상시지원
16	(비)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	▶ (비)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※ 최소 10개 이상		상시지원
17	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	▶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		상시지원
18	선행안전난간	▶ 호환형 난간기둥, 난간 수평재 ※ OK타입 전용 ※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		상시지원
19	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 개선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량 운반대차 ▶ 산업용 안전매트 ▶ 충돌재해 예방설비 ▶ 시청각(이중) 경보기 ▶ 문턱 제거(미끄럼 방지 조치)공사 ▶ 조명공사 	 	상시지원

□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(2종)

구분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비고
1	애플리케이션	▶ 통·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		상시지원
2	산업안전 디자인	▶ 산업안전 디자인(디자인과 관련한 도료공사, 표지, 도로반사경, 고보조명, 개인보호구함 등 포함) ※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중 시각 또는 환경디자인이 포함된 종합디자인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 한함		상시지원

1. 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

-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·작업·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·보건조치 확보 목적(조건)과 관련된 개선방안(①안전설비, ②작업환경, ③작업공정,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)에 대한 지원

※ 예)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,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

2. 지원불가 제품

- 위험설비·작업·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(조건)에 한정하며, 소모품 성격의 품목(개인보호구 등)은 신청 불가
- 스마트 안전장비,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 불가(국소배기장치 등)

3. 고위험 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 설비인 경우,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·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

4. 자율신청품목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별(양산품, 공사품) 아래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

양산품	공사품
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(거래명세서 포함)	공사원가계산서